

[별표 1의2]<신설 1986.11.11>

작업시안전담당자를지정하여야할위험물(제4조의7 관련)

1. 폭발성물질

- 가. 니트로글리콜·니트로글리세린·니트로셀룰로우스 기타 폭발성의 질산에스테르
- 나. 트리니트로벤젠·트리니트로톨루엔·피크린산 기타 폭발성의 니트로화합물
- 다. 과초산·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·과산화벤조일 기타 유기과산화물

2. 발화성물질

- 가. 금속리튬
- 나. 금속칼륨
- 다. 금속나트륨
- 라. 황린
- 마. 황화린
- 바. 적린
- 사. 셀룰로이드류
- 아. 탄화칼슘(카아바이드)
- 자. 인화석회
- 차. 마그네슘분말
- 카. 알루미늄분말
- 타. 마그네슘분말 및 알루미늄분말외의 금속분말

3. 산화성물질

- 가. 염소산칼륨·염소산나트륨·염소산암모늄 기타 염소산염류
- 나. 과염소산칼륨·과염소산나트륨·과염소산암모늄 기타 과염소산염류
- 다. 과산화칼륨·과산화나트륨·과산화바륨 기타 무기과산화물
- 라. 질산칼륨·질산나트륨·질산암모늄 기타 질산염류
- 마. 아염소산나트륨 기타 아염소산염류
- 바. 치아염소산칼륨 기타 치아염소산염류

4. 인화성물질

- 가. 에틸에테르·가솔린·아세트알데히드·산화프로필렌·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미만인 물질
- 나. 노말헥산·산화에틸렌·아세톤·벤젠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이상 0도미만인 물질
- 다. 메탄올·에탄올·크시렌·초산벤질(초산아밀) 기타 인화점이 0도이상 30도미만인 물질
- 라. 등유·경유·테레핀유·이소벤질알콜(이소아밀알콜·초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상 65도미만인 물질
- 마. 가연성가스(수소·아세틸렌·에틸렌·메탄·프로판·부탄 기타 섭씨 15도 1기압에서 기체로 있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.)